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16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백종헌 · 김상훈 · 박형수
김태호 · 권영진 · 서천호
이양수 · 안상훈 · 윤재옥
김기웅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자영업자·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있음. 아동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5항 신설)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아동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이 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위원이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해촉(解囑) 등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